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구체화(안 제20조)

도시가스사업자 및 직수입자들의 천연가스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국가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직수입자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사항 규정

나.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안 제23조)

국가 천연가스 수급현황 관리 및 가스시장의 거래질서 확보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 규정
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안 제6조 및 제6조의1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30. ~ 10. 1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제6조의12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범위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시기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에 관한 조정

5.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교환에 관한 조정

6. 기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제2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0조의6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6조 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

사업자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마. 법 제10조의1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2 제2항에 따라 가스

도매사업자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의 이행 실적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의 도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저장시설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5. 용도별 사용실적(수입·수출한 물량,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교환한 물량 등 자가소비 이외의 잔여물량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도입물량, 판매물량 등 수급실적, 시설이용현황,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교환·판매, 직수입자와의 교환, 타 선박용천연가스 사업자와의 교환·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1항제3호 중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신고, 변경신고 및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천연가스의 반입계약·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및”을 “천연가스의 반입계약·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변경신고 및 제10조의13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및”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을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제5항 또는 제10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법 제54조 제1항제2의3호	1,500	1,700	2,000
---------------	-----------------	-------	-------	-------

별표 2 제2호에 무목 및 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른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의4호	1,500	2,200	3,000
부. 법 제10조의1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3항제1의2호	500	700	1,0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생략)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u>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① (생략)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u><신설></u> ③·④ (생략)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2. (현행과 같음) <u>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u> <u>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u>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제20조(조정명령) ① ----- -----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
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에 관
한 조정

②·③ (생략)

<신설>

제23조(보고) ① (생략)

②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0조제1항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
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

· 범위 조정

2.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

· 시기에 관한 조정

3.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의 조정

4.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 교환에 관한 조정

5.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교환에 관한 조정

6. 기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구매조건(보고한 구매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구매조건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10조의6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6조 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마. 법 제10조의1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2 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③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
계획의 이행 실적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의 도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저장시설 이용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5. 용도별 사용실적(수입·수출한
물량,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량,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교환한 물량 등 자가
소비 이외의 잔여물량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한 재무
· 회계에 관한 사항 등

④ 법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도입물량, 판매물량 등 수급실적,
시설이용현황, 도시가스사업자
와의 교환·판매, 직수입자와의
교환, 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와의 교환·판매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등)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

1. · 2. (생략)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생략)

5. 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 및 변경신고, 천연가스의

반입계약·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 12. (생략)

②·③ (생략)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만원)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1,500	1,700	2,000

반입계약·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변경신고 및 제10조의13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및 -----

--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만원)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제5항 또는 제10조의1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	법 제54조 제1항 제1호	1,500	1,700	2,000

2) 도시가스사업 자인 천연가스 수출입업자	3,000	업자 2) 도시가스사업 자인 천연가스 수출입업자				3,000
<신 설>		3) 선박용천연가스 사업자	법 제54조 제1항 제2의3 호	1,500	1,700	2,000
라~루. (생략)		라~루. (현행과같음)				
<신 설>		무. 법 제10조의13 제2항에 따른 사 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5 4조 제 1항제2 의4호	1,500	2,200	3,000
<신 설>		부. 법 제10조의12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 4조제3 항제1 의2호	500	7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33